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19호)
- 유용원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60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신동욱의원안(의안번호 제2201219호)	1
II. 유용원의원안(의안번호 제2201660호)	2
III. 검토의견	3
1.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3

I . 신동욱의원안(의안번호 제2201219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동욱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7. 1.

다. 회 부 일 : 2024. 7.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II. 유용원의원안(의안번호 제2201660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유용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신동욱·유용원의원안은 직권남용 또는 위력행사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신동욱의원안은 직권남용 또는 위력행사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신동욱의원안 제3항 신설).
- 유용원의원안은 직권남용으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력행사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유용원의원안 제3항·제4항 신설).

현행	신동욱의원안	유용원의원안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제62조(가혹행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가혹행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신동욱의원안	유용원의원안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직권남용·위력행사로 학대·가혹행위를 한 경우(제62조)¹⁾와 폭행·협박으로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60조)²⁾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권남용·위력행사로 학대·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이 상해·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가혹행위로 군인 등의 상해·중상해·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법 제62조의 학대·가혹행위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³⁾ 등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음.⁴⁾

1)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각 호 생략)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각 호 생략)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얼차려 사망'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입건...출석요구, 2024.6.10., 연합뉴스

□ 개정안은 직권남용·위력행사로 학대·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이 상해·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군내 학대·가혹행위로 인한 상해·중상해·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직권남용·위력행사로 학대·가혹행위를 한 경우 신동욱의원안은 중상해, 유용원의원안은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여 구성요건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상해 및 중상해의 의미 및 유사 입법례의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의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⁵⁾,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함.⁶⁾

○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60조⁷⁾는

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6)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7)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규정하면서 해당행위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⁸⁾은 「형법」상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 둘째, 신동욱의원안과 유용원의안은 구성요건에 따라 상이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벌 수준의 경우 형법상 책임원칙에 따라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이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므로⁹⁾, 다음과 같은 현행법 및 형법상 형벌체계를 고려하여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각 호 생략)
(제2항 및 제3항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각 호 생략)

8)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 현재 2004. 12. 16. 2003헌가12 참조

< 현행법과 개정안 처벌규정 비교 >

현행법		신동욱의원안		유용원의원안	
직권남용 학대·가혹행위	5년 이하 징역	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해	10년 이하 징역
		사망	5년 이상 징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위력행사 학대·가혹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해	7년 이하 징역
		사망	5년 이상 징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형법상 유사 처벌규정의 범죄행위 유형 및 법정형 >

조문	범죄행위 유형	법정형
「형법」 제257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58조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73조, 제275조	학대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73조, 제275조	학대 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 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독직 ¹⁰⁾ 폭행·가혹 행위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2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독직폭행·가혹행 위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0)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 형법 제125조를 강학상 부르는 명칭. 독직(瀆職)이란 직무를 모독한다는 의미.

- 셋째, 현행법 제9장(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죄)은 적전¹¹⁾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군의 작전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¹²⁾ 같은 장의 대부분의 규정¹³⁾에서 적전인 경우 형을 가중처벌하는 형식¹⁴⁾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 형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국방부는 개정안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법」상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비례원칙 및 타법률과의 형벌체계상 균형성·형평성 등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문 의 처
02)6788-5051

11)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박찬걸, 2021, 군형법, 박영사

13)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제61조(특수소요), 제62조(가혹행위) 제외

14)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